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신설 및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 -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 규제대상 행위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거래,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2) 규제대상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도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제23조의2 제1항)
- (3)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 거래상대방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4조의2 제2항),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 제1항 9의2)

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

- (1)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변경하여 강화(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 (2)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 (3) 아울러 종전에는 부당지원을 한 지원주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게도 과징금을 부과(제24조의2 제2항)
- 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富의 이전을 차단하고,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규정의 신설 및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 라. 시행일은 부칙규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므로 금번 개정내용은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개정법 시행 이전 종료된 거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둠

2.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7월 2일자 보도참고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

가. 부당특약 금지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제3조의4)
- (2) 금지되는 부당특약 : ①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 기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나.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3조의2 제3항).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등에 대해 이견 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요건 의무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할 것을 규정.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7조 제2항 및 제3항)

라. 시행일은 부칙규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므로 금번 개정내용은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2.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통과)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행 개선 및 가맹점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 -

가. 영업지역 보호제도 강화

-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금지

나.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 (1) 가맹본부는 시설노후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2)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1)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
-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되는 행위;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ii)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라.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마.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 (1)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미제공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미보관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바. 허위·과장 정보제공 처벌기준 강화

- (1) 기존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만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도 금지
- (2)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규정 위반시 벌금액 상향조정(1억5천만원→ 3억원)

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제공방식 변경

- (1) 정보공개서 제공시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변경
- (2)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여부, 가맹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아.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의권 부여

- (1) 동일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

- 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성신편의 의무 부과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위반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자.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차. 동반성장협약제도 및 서면실태조사 제도 도입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성실히행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2)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카. 과징금 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권 폐지

-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2)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에도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

2. 다운로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통과)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개정 -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10조에 따라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함

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2. 다운로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엄격한 과징금 산정을 예고 -

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라 부과될 과징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개정된 과징금 고시는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이를 위해 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체계화하여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된 "세부평가 기준표"를 과징금 고시의 별표 내용으로 명시하고, ②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을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 기준율(0.5 ~ 10%)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시켰음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

(현행)		(개정)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7%이상 10%이하	매우 중대한	2.6이상	8%이상 10%이하
			2.2이상 2.6미만	7%이상 8%미만
중대한	3%이상 7%미만	중대한	1.8이상 2.2미만	5%이상 7%미만

중대성이 약한	0.5%이상 3%미만

	1.4이상 1.8미만	3%이상 5%미만
중대성이 약한	1.4미만	0.5%이상 3%미만

2. 다운로드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3. 6. 5. 개정